# 반려동물 연관산업 상품 연구·개발 사업 모집공고

국내 반려동물 연관사업 관련 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상품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 2025년 3월 0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수출 직전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술 고도화, 바이어 요구사항              |
|--|
| 반영을 위한 상품 연구·개발 지원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
| 사업내용: 해외제품등록(시험성적서 발급 등) 등을 위한 제품의 임상ㆍ               |
| 비임상 · 성능시험 및 제품 시험인증 컨설팅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
| 성능(효과) 실증ㆍ시연 비용, 성능 검증을 위한 장비 활용 지원                  |
| 지원기간: 사업약정일 ~ 11월30일(예정)                             |
| 지원한도/비율: 업체당 <b>최대 30백만원(국비기준)</b> / 국비 70%, 자부담 30% |

## 2. 지원사항

- □ 지원대상: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기업
  - o 수출 가계약, 수출 MOU 체결, 바이어 제품 수입 의향서 등을 갖춘 기업 등 수출 계약 등이 진행 중인 기업
    - \* 구체적 MOU를 체결하였거나, 계약 준비 중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LOI 실증요청서 등)을 구비한 업체 지원 우대
    - \* 단순 수출 희망 업체나 수출 박람회 참석 등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외
- □ 지원품목: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려 제품 및 서비스

□ 지원규모: 20개사 \*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  |
|------|---|--|--|--|
| 시험인증 | ■ <u>해외제품 등록을 위한 임상·비임상·성능시험 비용</u> - 임상, 비임상, 성능시험 수행이 가능한 국내·외 성능시험기관 등<br>외부위탁 소요비용 및 제품 시험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 컨설팅 비용 한도는 20백만원 / 기업 자체 수행한 성능시험비용(자가 실험비용)은 지원 제외   |  |  |  |
| 실증   | <ul> <li>■ 반려동물 연관산업 제품, 서비스의 고도화(제품개선), 바이어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성능(효과) 실증(시연)을 위해 필요한 경비</li> <li>- 실증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제품·서비스의 성능이나 효과 등을시험하는 것을 말함(기호성 테스트 안전성 검증 등 포함)</li> <li>-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경비, 통관·배송·운송비 등 포함</li> <li>- 성능 검증을 위한 장비 활용 비용 지원 * 자산성 장비 구입 비용은 지원 불가</li> <li>- 수출과 상관없는 단순 기기 성능이나, 솔루션 시범 가동 등에 관한 비용,제품 홍보를 위한 소비자 체험행사, 박람회 등 참가는 지원 불가</li> <li>- 지원대상(업체) 임직원의 인건비, 여비 등 지원 불가</li> </ul> |  |  |  |

### □ 지원제외 및 참여제한

- ㅇ 동일한 사업건에 대해 정부, 지자체, 타 공공기관중복 수혜 불가
- ㅇ 자사 제품(또는 서비스)가 아닌 타사의 제품(서비스)를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
- ㅇ 아래의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참여제한 요건

- ① 기업의 휴·폐업
- ❷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중인 기업
  - \* 단,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 ❸ 신용정보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대표자)
  - \* 단, ①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③ 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⑥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 4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를 받은 기업
-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 6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기업

### 3. 신청방법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u>마감이 1~2일 이전에</u>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②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완료건**만 인정 시간 엄수 必
- □ 신청기간: 공고일 ~ 2025.3.18.(화) 17:00까지
- □ 신청방법: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신청
  - 로그인 → 사업신청 → 모집공고/신청 →  $\Gamma2025년$  반려동물 연관 산업 상품 연구ㆍ개발 사업」선택→ 사업신청
- □ 제출서류
  - ★ 타 수출지원사업 신청으로 One Pass 인증을 완료하였더라도, 해당 사업 신청시 One Pass 현행화 반드시 필요

|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
|--------|--------------------------------------|---|--|--|--|
| 필수     | ○ 사업신청서                              | ○ 서식 1 작성, [첨부파일 정보] 항목에서 업로드   |  |  |  |
|        | ○ 사업계획서                              | ○ 서식 2 작성, [첨부파일 정보] 항목에서 업로드   |  |  |  |
|        | ○ 사업수행 확약서(필수)                       | ○ 서식 3 작성, [첨부파일 정보] 항목에서 업로드   |  |  |  |
|        | <ul><li>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활용 동의서</li></ul> | ○ 서식 4 작성, [첨부파일 정보] 항목에서 업로드   |  |  |  |
|        | ○ 법인등기부등본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외  |  |  |  |
|        | ○ 사업자등록증                             | ○ One Pass 시스템을 통한 제출   |  |  |  |
|        |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 `24년 미결산 업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  |  |  |
|        |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과제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  |
| 선<br>택 | ○ 2024년 수출실적 증명원                     | <ul> <li>관세청 수출통관신적: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br/>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택일)</li> <li>*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 제출 제외<br/>[첨부파일 정보] 항목에서 업로드</li> </ul> |  |  |  |
|        | ○ 수출계약 증빙자료                          | ○ [첨부파일 정보] 항목에서 업로드<br>* <u>계약서, LOI, MOU, 실증 요청서 등</u><br>* 이외 평가에 참고 가능한 서류 제출 가능                                    |  |  |  |
|        | ○ 기타 참고자료                            | ○ 기업소개, 사업대상 품목 소개, 시험기관 등 추진방법에<br>대한 설명 자료 기타 사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  |  |

<sup>\*</sup> 필요시 제출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및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4. 사업자 선정

□ 선정절차

#### 서류심사(aT)

- 자격요건 검토
-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 발표평가 일정 등 안내

#### 발표평가(평가위원회)

사업의 필요성,
 제품(또는 서비스)의
 우수성, 사업 추진 계획,
 기대효과 등 발표

#### 결과발표(aT)

- 평가결과에 따른 선정결과 안내
- 약정 체결 등

### □ 평가방법

- 어 서류심사: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 서류에 대한 누력 여부, 필수 자격요건 확인 등을 통한 사업 참여 적정성 검토
-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미달 또는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부적격 처리
- ㅇ 발표평가: 서류심사 결과 적격업체 대상 선정 평가위원회 대면평가
- 세부 평가항목은 참고 1 참조
- 평가시간 20분: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평가는 3월 24일(월) ~ 26일(수) 기간 중 서울소재 회의실에시 진행 예정
  - \*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서류 마감 이후 aT에서 별도 안내
  - \* 사업 신청 규모에 따라 평가일정은 축소 가능하나, 업체별 안내된 시간은 변동 불가
  - \* 발표평가 미참여 시 서류평가로 대체 추진(온라인 발표평가 불가)
- ★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평가 진행**(별도자료 제출 불가) 평가자료는 aT에서 준비
- o 평가위원회 구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 점수산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출평균하여 산출
  - \*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로 함
- □ 최종업체 선정: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o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 결과발표 : 2025년 3월 28일 \* 추진과정에서 변동 가능
  - 확인방법: http://global.at.or.kr 접속→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 신청관리→ 2025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상품 연구・개발 사업 → 선정여부

### 5. 향후 추진절차

## □ 약정체결

- o 선정 사업자는 aT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약정을 체결함
- 약정체결 시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총사업비, 사업항목 조정 가능

### □ 사업수행

- ㅇ 약정체결 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품 개발 연구사업을 수행해야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aT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수시 사업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선정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 중간평가(6월 중) 시 사업계획의 변경 가능하며, 사업 추진이 미진할 경우 예산 재배정, 삭감 등 가능 \* 중간평가 일정 및 양식은 aT에서 추후 공지
- 약정 체결 이후 지원제외 및 참여제한에 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부도, 사업 포기,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계획서 허위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정 취소 가능

|  | 사업비 | 정산 | 및 | 검증 |
|--|-----|----|---|----|
|--|-----|----|---|----|

- ㅇ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여야함
- 아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증빙 등을 aT 또는 지정한 전문 기관에 제출해야함

### □ 성과보고

사업종료 후 2년간 실시하는 수출계약 체결, 수출실적 등 주요
 사업성과 모니터링에 적극 응해야함

### 6. 기타 유의사항

- □ 약정서 체결 이후 사업취소 또는 사업 미추진 시 차년도 사업선정 제외
- □ 수출성과 등에 모니터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aT 수행중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 사업에 패널티 부여 가능
- □ 관련규정, 작성가이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으며, 세부사항은 aT 판단에 따름
- □ 모든 안내는 신청서상 실무자에게 안내하오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 바람
- □ 기타 지원제외 등 사업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법 등 관련법령 및 제규정에 따름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 7. 문의처

□ 담당부서: aT 신사업 TF (061-931-0891, 0892 / 이메일: atpet@at.or.kr)